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건축정책과
2019. 7. 29.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2019. 7. 2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으로 요약되는 이번 개정안은 8월 6일 공포를 마쳤으며, 공포 3개월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에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며,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에 따른 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특히 피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린이·노인·환자 등이 이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건축물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층간 방화구획을 확대하여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고 건축물 내부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 부족문제를 해소토록 하였다.

- 건축물 개요 : ○○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3억 5,800만 원, 위법 유형 :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 이행강제금
현재 : 1,070만 원(시가표준액×3/100), 개선 : 3,580만 원(시가표준액×10/100)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2019).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월 29일 보도자료.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공급·시공 절차 강화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의 첫 결과물로, 체계적인 자재 관리를 통해 불량 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방화문과 단열재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건축자재의 경우 제조·유통업자와 시공자·공사감리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기존 내화구조·복합자재에서 단열재·방화문·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로 확대되고,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된다. 또한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재성능과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단열재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 품질관리서 작성제도란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자재의 적합 및 공급 여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제도.